



축산식품 가공관리업무 일원화 (2)

배상호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V. 정부 입법 추진

①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작성

① 특별대책반 구성 · 운영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른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작성은 비롯하여 축산물위생관리 향상 및 축산물가공 · 유통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97.12.1.부터 '98.6.30.까지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구성 · 운영하였으며,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이영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기관은 축산국장 · 유통정책국장 · 행정관리 담당관 · 법무담당관 · 동물검역소장 · 경기도 농정국장, 연구기관은 수의과학연구소장 · 축산기술연구소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부원장, 학계에 강인구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 박종배 한국가축위생학회장 · 김창한 한국축산식품학회장을, 업계는 이홍구 한국유가공협회전무 · 김동곤 한국육가공협회부회장 · 최명저 한국축산기업조합 중앙회장, 생산자단체는 원광식 축협부회장 ·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소비자단체는 강광파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이사 등 19명을 각각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축산물위생관리 향상방안, 가공 · 유통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방향제시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문 개정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실무작업안에 대한 검토 등의 활동

을 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축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기관 · 단체 · 학계 · 업계의 실무책임자 16명으로 구성 ·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에 자문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7회를 각각 개최하여 축산물 위생처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문개정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

②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존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으로부터 신규로 이관되는 축산물 가공 · 운송 · 보관 · 판매 등의 업종과 품목 등이 추가되었으며, 조문구성은 기존 24조 부칙 5조에서 개정안 8장 47조 · 부칙 9조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식육과 원유로 한정되었던 축산물에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을 포함하여, 축산물의 도축 · 처리 · 가공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위생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가공 방법 · 성분규격 · 위생등급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되, 항생물질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축장 등 작업장에서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처리·가공·유통 등 전과정에서 오염방지를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축장 등 작업장에서 축산물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인력의 부족에 대비하여 수의사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검사보조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축산물의 성분함량·잔류물질·미생물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축업과 축산물가공업 등을 행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각종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② 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사전심사

① 부처간 협의 및 입법예고

법 개정안에 대하여 197.4.24일부터 5.6일까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여 재경원, 법무부, 통상산업부, 총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오히려 현재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행정 및 위생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4.26~5.16 :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전국의 기관·단체·학계·업계 등에 널리 알려, 개정안의 입법취지, 주요골자와 내용 등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였다.

197.5.9 : 한국축산학회, 낙농학회, 가축위생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수의학회 등 9개 한국 축산관련학회 연명으로 축산식품가공업무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신한국당,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97.5.15 :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였다.

'97.5.16 : 축협조합장 대표 8명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방문하여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② 당정협의회 개최

'97.5.6 : 신한국당 제3정책위원장 함종한의원 주재로 당정정책협의회를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축산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참석자는 신한국당의 농림전문위원과 보건복지전문위원, 농림부의 이영래 차관보와 가축위생과장, 보건복지부의 식품국장과 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참석하여 양부의 입장설명과 토의가 있었다.

'97.5.8 : 농림부의 이영래 차관보와 가축위생과장이 재경원 안병우 차관보와 청와대 최양부 농림해양수석에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97.5.9 :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중위 의원 주재로 농림부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였다.

'97.5.10 : 농림부 이영래 차관보와 가축위생과장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방문하여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 설명과 협의를 하였다.

'97.5.12 :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나오연 의원과 제3정책조정 위원장 함종한 의원에게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가졌다.

'97.5.19 : 청와대에서 농림해양수석에게 농림부 이관용 축산국장, 가축위생과장이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하였고, 신한국당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③ 법제처 사전심사

'97.5.12.부터 법제처 농림해양법제관실(한장리



법제관)에서 사전 심사를 시작하여, 5.21.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경제차관회의 상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③ 경제차관회의 상정 심의

① 경제차관회의 준비

'97.5.24~5.27 : 가축위생과에서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법 개정안을 사전 배포하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97.5.24 : 농림부 이영래 차관보가 재정경제원 강만수 차관에게 경제차관회의에 대비하여 개정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였다.

'97.5.27 : 농림부 차관보와 축산국장이 경제차관회의 참석자 전원을 방문하여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였다.

② 경제차관회의

'97.5.28.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재경원 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5가지 심의안건 중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은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으로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조일호 농림부 차관으로부터 법 개정안의 개정 사유, 주요골자와 관계부처 협의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전계휴 보건복지부 차관의 반대입장 설명과 통상산업부차관의 찬성발언, 해양수산부 차관의 반대발언이 있었다.

강만수 재경원차관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과 양 부처 장·차관에 긴밀협의 후 재상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유보하였다.

③ 경제차관회의 후속부처 협의 및 홍보

'97.5.31 : 농림부 이영래 차관보가 소비자연맹,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보호단체장을 초청하여 축산식품가공업무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97.6.2 : 농림부 차관이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97.6.3 : 보건복지부차관이 정시채 농림부장관에게 반대입장을 설명하였다.

'97.6.5 : 실무국장 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부처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97.6.12 :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시 축산식품가공업무일원화에 대한 결의대회와 생산자단체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3당을 방문하여 마사회강당에서 축산식품관리업무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97.6.16 :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중위의원 주재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차관 및 실무국장, 과장이 참석하여 축산식품 관리업무의 효율화 방안 협의를 위한 당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각 부처 입장 주장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97.6.19 : 농림부 이영래 차관보와 가축위생과장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태식 의원께 축산식품관리일원화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으며, 국무총리실 제1행정조정관과 협의를 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97.6.23 : 이경호 식품정책국장 주관으로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장을 초청하여 협의회를 가졌으나,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거센 반발이 야기 되었다.

'97.6.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사항과 농림부의 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97.7.3 : 농림부 정시채 장관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생산자 소비자 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림부의 대책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축산식품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원철

희 농협중앙회장, 송찬원 축협중앙회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을 비롯하여 김천주 주부클럽 연합회장, 송보경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장, 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황민영 농어민신문사장, 윤봉중 축산신문사장 등 각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④ 경제장관회의 상정 심의

① 국무총리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97.7.4 : 국회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국회를 대비한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입장과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축산식품관리업무일원화와 관련하여 경제차관회의에서 유보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하여 검토 후 국무회의에 상정·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② 법 개정관련 차관조찬간담회 개최

'97.7.10 07: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법개정관련 6개부처의 차관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농림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과 총무처 차관, 재경원 차관보, 법제처 차장 등이었다. 이기호 행정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법개정과 관련하여 '97.4.7. 행정쇄신확정과제로 확정하여 관련부처에 홍보하였으나,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 간담회를 차관회의로 갈음하고 부처간 협의를 종용하였다.

전체후 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성격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진행되자 자진 퇴장하여 불참하였다. 그러나 행정조정실장은 회의를 진행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법제처 차장의

정책결정과정 절차상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장관회의에 동법 개정안을 상정 후 회의결과 의견을 첨부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협의토록 결정하였다.

③ 경제장관회의 상정 심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법 개정관련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97.7.14.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식 재경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심의하였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법 개정안의 개정사유, 주요골자 및 행정쇄신과제 확정 경위와 관계부처 협의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생관련 기준 제정을 당초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조정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업무와 원유의 집유업무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반대입장 설명이 있었다.

양 부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강경식장관은 재정경제원 주재 양 부처 1급회의에서 협의 후 재상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유보하였다.

농림부장관은 '97년 정기국회 상정을 위하여 기일이 촉박하므로 경제장관회의결과 의견을 첨부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심의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7.15.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상정이 취소되었다.

④ 재정경제원 주관 부처간 업무협의

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부처간 1급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97.7.19 : 1차로 재경원 정덕구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농림부의 이영래 차관보와 보건복지부의 김용문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축산식품관리



업무일원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를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축산식품의 위생관련 기준제정을, 보건복지부가 농림부와 합의를 거쳐 제정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행쇄위 의결안은 농림부가 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생규격기준제정은 물론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축장·집유장 관리업무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부처간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97.7.24 : 제2차부처협의회가 재경원 안병우 제2차관보 주재로 농림부의 이관용 축산국장과 보건복지부의 이경호 식품국장간에 협의회를 하였으나, 양 부처가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VI. 입법청원 및 국회 입법추진

①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입법청원

① 청원소개 의원서명

'97.4.7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으로부터 제120차 행정쇄신확정과제인 '축산식품관리업무일원화를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97내 개정토록 관계부처에 통보된 바 있으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이 5.28. 경제차관회의 상정 심의에서 유보되는 등 정부입법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법 개정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축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축산관련단체가 주축이되어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 정부입법과 병행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97.6.부터 입법청원을 위한 각당 국회의원의 청원소개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② 입법청원서 제출

'97.7.11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외 235인이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원 155인의 소개를 받아 국회사무처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청원인은 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대표 212인과, 한국부인회 총본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대표 5인, 그리고 축산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등 학술단체 대표 19인 등 236명이다.

청원 소개 의원은 이상배의원 등 신한국당의원 57인, 이길재의원 등 새정치국민회의원 38인, 정일영의원 등 자유민주연합의원 38인, 권기술의원 등 민주당의원 3인, 김영준의원 등 무소속의원 2인등 155인으로서 국회의원 299인의 과반수를 초과했으며, 소개의원 중에는 채영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15명 중 조찬형의원, 최연희의원 등 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

① 청원심사 소위원회 개최

국회의장으로부터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입법청원이 소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7.7.28. 10:30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김진배 소위원장 주재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소위의원으로는 신한국당의 이완구의원, 이강두의원, 주진우의원과 국민회의 윤철상의원과 자민련의 정일영의원, 허남훈의원 국회의 김호영 수석전문위원, 장인석 입법심의관과 농림부에서는 이영래 차관보와 이상무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였다.

위원회 의결내용은 청원인들이 요청한대로 청원을 받아들이며, 위원회 제안입법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입법안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7.30. 임시국회가 폐회되었다.

②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97.11.3 : 정기국회 회기 중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되어, 김진배 청원심사 소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소위원회 결정 내용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확정하였고, 국회 입법추진은 의원발의와 위원회 제안 입법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결정하였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은 신한국당 김기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3당 간사인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자민련 정일영의원을 포함 구성하기로 하였다.

'97.11.5 :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기초 성안키로 하였다.

'97.11.10 : 제9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성안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 · 의결하였다.

③ 법 개정 필요성 통보 및 논쟁

'97.8.8 : 이효계 농림부장관이 부임하여 축산국장이 축산식품 관리일원화 관련 업무추진경위와 대책보고를 한 후, 8.2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개최시 농림부장관이 추진경과를 설명하였다. 9.2. 당정협의회와 9.11.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농림부장관의 법 개정의 당위성 설명과 금년 정기국회에서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97.9.12 : 축산관련단체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입법청원 처리를 위한 협조요청과 함께 대선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9.18.에는 신한국당 신임 이해구 정책위원회에게, 9.22.에는 신한국당 이상배의원에게 농림부

장관이 법 개정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9.23. 당정협의회에서 재요청하였다.

'97.9.25 : 농정개혁촉구대회에서 4당 대통령 후보에게 입법청원 국회처리와 대선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97.10.4 : KBS 1TV 심야토론프로의 “수입축산물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사토론에서 단국대 장원석교수는 개방화시대에 국내 농축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축산식품 관리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7.10.20 : 이관용 축산국장은 KBS 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 프로에서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WTO체제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보호수단임을 강조하였다.

'97.10.17 : 이효계 농림부장관은 고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추진 지연상황을 보고하였다.

'97.10.22 : 국무총리실 제3조정관은 부처간 의견조정 협의를 통해 농림부로의 일원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10.29.에는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입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④ 축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97.10.17. 축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병원성대장군 O-157의 국내검사사항과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박종세 독성연구소장이 대리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다.

김영진의원, 이길재의원, 이완구의원, 정일영의원, 이우재의원, 김광원의원 등의 일문일답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인수공통전염병과 축산물에서 유래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관하여는 수의사가 전문성이 있으며, 선진국과 같이 농림부에서 관



장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가공산업 일원화에 동의하여 전문기관육성을 건의한다는 박종세 중인의 증언이 있었다.

⑤ 국회 관련 위원회에 3당 정책위원회 입장 통보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안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 약속사항으로써, '97.11.3. 자민련 정책위원장 명의로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농림해양수산위의 소속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대선 공약사항으로써 11.7. 정책위 의장 명의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발송하였고, 신한국당 이해구 정책위 의장은 관련 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에게 구두로 협조를 당부하였다.

③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①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입법청원 심사

국회의장으로부터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입법청원(7.11.)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 회부됨에 따라,

'97.8.20 : 보건복지위원회 채영석 위원장 주재의 청원심사에서 입법청원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통보하였으며, 일부의원은 도축장과 집유장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7.9.24 :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보건원 대강당에서 “21세기 바람직한 축산식품 관리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KBS 1TV 9시 뉴스에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보도를 한 바 있었다.

②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반대 청원

'97.9.29 : 한국식품공업협회 천명기 회장 외 일반식품 관련단체 20인이 신한국당 황성조의원

외 8인의 소개로 7.11. 축산관련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였다.

'97.10.1 : 국회의장은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게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심사·보고하였다.

③ 식품위생법개정 입법청원

'97.9.29 : 한국식품공업협회 천명기 회장 외 일반식품관련단체 21인이, 신한국당 황성균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축산물위생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과 원유의 집유단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관성있게 관리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97.10.1 : 국회의장은 식품위생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관련 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97.11.10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주당의 김홍신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상정·의결하였다.

④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상정 의결

'97.11.13 :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입법 절차상 문제로 의결을 유보하였다.

소위원장은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이며, 위원으로 신한국당 홍준표의원, 최연희의원, 국민회의 조순형의원과 자민련의 정상천의원이 참석하였다.

'97.11.15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림부의 조

일호 차관과 보건복지부 김용문 차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의가 있었으며, 최연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이 행정쇄신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법사 상임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다. 이때 소위원회 회의장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우재의원, 이길재의원, 정일영의원 등이 입회·참관하여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②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97.11.17 14:00 :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찬형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규격기준 제정과 최종제품의 유통판매단계 위생검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수정내용은 11.17. 10:00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양부처 차관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다.

1. 수정내용

축산물에 대한 위생기준제정시 부처간 협조할 사항과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과의 업무관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①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것을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협의”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4조 제2항)

②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 판매업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여 식품위생법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9조 제1항)

⑤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공포

① 본회의 제안설명 및 찬성·반대 토론

'97.11.18 :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의결정족수인 158명이 참석하여 각종 법안과 함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신한국당 이우재의원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입법 경위와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홍신의원, 신한국당 정의화의원, 국민회의 채영석의원 등의 반대입장 설명이 있었고, 특히 채영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가 눈을 뜨면 농림부 소관이요, 눈을 감으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표현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찬성토론자로는 자민련의 정일영의원, 신한국당의 이우재의원 등이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외국의 경우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식품관리업무가 당연히 농림부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② 본회의 상정·의결

국회의장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성토론이 끝난 후 표결을 선언하였으며, 밖에 나간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표결에 참여하도록 장내 정돈을 하였다. 이어서 투표가 질서있게 진행 되었으며, 개표결과 국회의원 299명 중 참석의원이 158명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 90명, 반대 21명으로 의결이 선포되었으며 역사의 의사봉이 힘차게 두들겨졌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공포

'97.11.28.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12.2. 고건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 되었고, 김영삼대통령 재가 후, 12.13. 법률 제5443호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1조에 의거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전문개정을 하였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812호로 '98.6.20.자로 공포되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은 농림부령 제1287호로 '98.7.3. 공포 시행되었다.

VI. 결론

가축위생관리업무의 목적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양축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명제로 대별될 수 있다.

축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축산식품을 통하여 전염되는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이 100여종(국제수역사무국 OIE 통계) 있으므로, 가축의 사육 및 도축·가공·유통·판매 전단계가 일관성있게 전문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생관리되어야 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Farm to Table)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선진입국과정에서 '97.12월 축산식품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된 것은 WTO/SPS 협정(세계무역기구,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의거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에 대한 차별없는 위생검사와 가공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역사의 장을 이루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을 연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98.8.1.자로 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폐합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탄생은 기획부서인 중앙행정기관과 집행부서인 검역·검사·연구기관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유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선진국형 행정구조조정의 대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공포와, 이와 수반된 행정조직개편 내용은 '98.5.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 연례보고서 포함되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여러나라로부터 깊은 관심표명이 있었다.

농업과 함께 축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산업임과 동시에 안보 산업이며, 기본식량과 축산물의 자급없이는 선진국대열에 서기 위한 구조적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

2001년이면 쇠고기마저 수입개방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살 길은 품질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고품질의 축산식품은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향상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농축산업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생산자가 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면 명목상의 “身土不二”는 세계화와 벽을 쌓는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앞으로 보다 확고한 축산식품 위생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소비자보호와 축산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관련업체·단체·학계·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선진조국을 앞당길 것을 다짐하면서 논고를 맺는다.